

소기업·창업기업 등에 대한 입찰참가 지원 및 방산기업 재정부담 완화

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 (☎ 02-2079-6912, 6914)

- 방산분야 입찰참가 업체에 대한 **적격심사*(10억 이상 물품) 시 소기업·소상공인 및 창업기업의 과거 납품실적 인정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.**

* 경쟁입찰을 통한 물품 제조·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하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

- 방산기업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**계약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증서 발급기관도 확대합니다.**

- 계약이행 후 정산원가가 계약금액을 초과한 경우 수정계약 체결 절차를 거쳐 지급하던 **정산유보금을 수정계약 체결 전에 조기에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.**

- 또한, 계약 관련 지체상금 부과 유보를 위해 기업이 제출하는 **보증서의 발급기관이 금융기관에서 공제조합까지 확대됩니다.**

☞ 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> 업무·정책 > 법령(방위사업청 행정규칙) 개정('25. 2월 예정)

* 「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」, 「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」, 「계약특수조건 표준」

<소기업·창업기업 및 방산기업 지원 강화>

- **추진배경** : 소기업·창업기업의 방산참여 확대 및 방산기업의 재정 부담 완화
- **주요내용**
 - 소기업·창업기업에 대한 적격심사 시 납품실적 인정 기간 확대(3년→5년)
 - 계약대금 정산유보금 조기 지급 제도 마련
 - 보증서 발급기관을 금융기관에서 각종 공제조합까지 확대 적용
- **시행일** : 「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」 등 **예규 개정 시행일**('25. 2월 예정)부터 적용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소기업·창업기업 등에 대한 입찰참가 지원 및 방산기업 재정부담 완화	□ 물품 납품실적 인정 기간은 3년으로 제한	□ 입찰참가 업체에 대한 물품 납품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창업기업 및 소기업·소상공인의 물품 납품실적 인정 기간은 최근 5년으로 확대하여 입찰참가 기회 확대 ※ 창업기업 및 중·소기업, 소상공인 여부는 『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』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	◦ 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◦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('25. 2월 예정)
	□ 개선계약의 경우 정산원가가 확정될 때까지 정산유보금(계약금액의 10% 이내)을 제외하고 납품대가 지급이 가능함에도, 정산원가 산정 결과 계약금액 초과가 확인된 경우에도 명확한 규정 부재로 정산유보금 지연 지급	□ 정산결과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한 원가가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원가정산 확정 수정계약 체결 전에도 해당 유보금을 조기 지급	방위사업청 계약제도 발전과 (02-2079-6914)
	□ 現 계약특수조건 표준 상 지체상금 부과 유보를 위한 보증서를 금융기관과 일부 특정 공제조합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선택권 제약	□ 보증서 발급 인정기관을 모든 공제조합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보증 부담 완화	계약특수조건 표준 ('25. 2월 예정) 방위사업청 계약제도 발전과 (02-2079-6912)

2

함정 성능보장과 승조원의 안전보장 강화

함정 성능보장과 승조원의 안전보장 강화

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 (☎ 02-2079-6912)

- **함정 성능보장과 승조원의 안전보장을 위해 함정 탑재장비에 대한 예방정비를 강화합니다.**
 - 함정의 온전한 성능 발휘와 승조원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**함정에 탑재되는 각종 장비의 성능보장이 필수적**
 - * 함정 건조 중 장비 고장 발생 시 함정 인도 지연 및 승조원 안전사고 우려
 - 이에, 함정 건조 업체로 하여금 **함정 시운전 기간 중 탑재 장비에 대한 예방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제출** 하도록 하여 함정 성능보장과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게 됩니다.
- ☞ 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> 업무·정책 > 법령(방위사업청 행정규칙) 「계약특수조건 표준」 개정('25. 2월 예정)

< 함정 성능보장과 승조원 안전보장 강화 >

- **추진배경** : 건조 함정 성능보장 및 승조원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
- **주요내용**
 - 계약상대자(함정 건조업체)는 함정에 탑재되는 각종 장비에 대한 예방정비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매월 제출하도록 제도화
- **시행일** : 「계약특수조건 표준」 개정 시행일('25. 2월 예정)부터 적용

2-1

「신·구 대비표」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함정 성능보장과 승조원의 안전보장 강화	<input type="checkbox"/> 함정의 성능발휘 및 적기 인도를 위해 함정 탑재 장비의 성능보장 및 품질 보증이 전제되어야 하며, 함정 승조원의 안전관리 예방 차원에서도 사전 예방정비 강화 필요	<input type="checkbox"/> 함정 건조업체는 시운전 기간 중 함정에 탑재되는 장비에 대해 장비별 정비계획 및 주기에 따라 예방정비를 실시 하고, 그 결과를 매월 제출 하도록 하여 함정 성능보장 및 안전사고 예방	계약특수 조건 표준 ('25.2월 예정)
			방위사업청 계약제도 발전과 (02-2079-6912)

3

국방과학기술료 산정·징수에 관한 고시 개정

상생발전을 위한 국방과학기술료 고시 개정

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(☎ 02-2079-6388)

- 방산수출이 활성화되고 국방연구개발 환경이 변화되는 여건을 고려하여 방산기업과 국방기술보유기관이 상생할 수 있도록 **국방과학 기술료 산정 및 징수제도를 개선**합니다.
 - * (기술료) 방산업체 등이 국방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는 대가로 기술보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, 연구개발 재투자율과 연구개발 기여도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사용
- 기술료 재원이 **국방연구개발의 선순환적 발전에** 기여할 수 있도록, 방산수출 지원을 위해 '23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해 오던 수출기술료 50% 감경조치를 '24.12.31.부로 종료합니다.
- 또한, 방산업계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**기술료 산정방식과 감면조건을 실효성 있게 개선**하고, 기술료 산정기준을 정량화하여 기술료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, 국방연구개발에 **참여한 업체의 기여도를 반영**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.
- 개정 「국방과학 기술료 산정·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」는 '25년 1월 1일 부로 시행 예정입니다.
- ☞ 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>방위사업청 뉴스>보도자료>상생발전을 위한 국방과학기술료 고시 개정('24.11.15.)

<국방과학기술료 고시 개정>

- **추진배경** : 기술이전/수출 수요 증대 등 환경변화와 업체 및 국과연 등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추진 필요
- **주요내용**
 - 방산수출 기술료 50% 감경 조치 종료('24.12.31.부)
 - 기술료 산정기준 현실화 및 산정방식 간소화(기본기술료 가중치를 '범위형' → '고정값'으로 구체화 등)
 - 기술료 감면조건 현실화(수출물량에 따른 감면조건 삭제 등)
- **시행일** : 2025년 1월 1일

3-1

「신·구 대비표」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기술료 산정방법 개선	□ 기술료 산정 시 기준(조달가, 수출가 등) 적용이 어렵거나 기준 및 산식이 복잡하여 현실성 및 예측가능성이 부족	□ 방산물자 등의 수출 시 경상 기술료 기준을 '순수출가'로 현실화 하고, 기본기술료 산정 시 가중치를 '범위형'에서 '고정값'으로 구체화	국방과학 기술료 산정·징수 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('25.1.1.)
연구개발 참여업체의 기여도 반영근거 마련	□ 방산물자 등을 수출하는 경우, 개조/개량 등 업체 기여도가 있음에도 반영 근거 없음	□ 수출을 위해 성능/형상 등이 변경된 경우, 기술료 산정 시 업체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	
기술료 감면조건 현실화	□ 수출물량에 따른 감면 조건은 국내운용 및 전력화 계획수량 파악이 제한적·유동적임에 따라, 실무상 적용에 한계	□ 국내운용/전력화 계획대비 수출물량에 따른 감면조항 삭제	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 (02-2079-6388)
기술료 징수한도에 대한 제외조항 마련	< 신규 >	□ 국가예산이 투입된 연구개발 성과의 수혜가 국가와 국내 방산업체 등에 환류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, 기술도입국에 의한 제3국 수출 등 일부사유는 기술료 징수 한도 미적용	

4

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

방위산업기술 보호기반 강화를 위한 「방위산업기술 보호법」 개정

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(☎ 02-2079-6292)

-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방산기술 국외 유출의 처벌을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 벌금 병과로 강화합니다.
-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·사용 권한이 소멸함에 따라 대상 기관으로부터 반환·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·기피하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도 금지 행위의 범위에 추가됩니다.
- 또한, 그간 방위사업청 훈령으로 운영되던 방위산업기술 보호 지침*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대상기관 등에 대한 효력을 지닐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 - *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: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,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방위사업청 훈령으로 2019. 2월 제정
- 개정 「방위산업기술 보호법」은 '25년 6월 시행 예정입니다.
- ☞ (참고) 「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」 '24.11.8. 국회 통과 >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
< 「방위산업기술 보호법」 개정 >

- 추진배경 : 최근 산업분야에서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막심함에 따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정들을 정비 필요
- 주요내용
 -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 처벌 강화 및 금지 행위 추가
 -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법적 근거 신설로 대외적 효력 개선
 -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 근거 신설 등
- 시행일 : 2025년 6월(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, 현재 미공포)

4-1

「신·구 대비표」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
			관계 부서
방산기술 국외 유출 처벌 강화	□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 (임의적 병과)	□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의 벌금 (필요적 병과)	「방위산업 기술 보호법」 ('25.6.)
방산기술 유출 및 침해 금지 행위 추가	□ 신설	□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반환이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	
방산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근거	□ 신설	□ 방위사업청장은 방산기술의 유출 방지·보호를 위해 필요한 방법·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야 함	방위사업청 기술보호과 (02-2079-6292)
방산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 근거	□ 신설	□ 방위사업청장은 방산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해 방위사업청의 출연기관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	

5

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정

방위산업 분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정

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(☎ 02-2079-6463)

- 점증하는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「공급망안정화법」 제정(24. 6.)에 따라, 방산분야 “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” 선정,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합니다.
 - 방위사업청은 국가안보에 필수적이거나 국민경제에 지대한 파급 효과를 미치는 21개 품목을 “경제안보품목”으로 지정(24.6.27.)하였고,
 -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전문적 평가를 거쳐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선도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.
 - * 방위산업 분야 제1차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완료(24. 8.)
 - 아울러 선도사업자가 제출한 “공급망 안정화 계획”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생산설비 증축, R&D, 비축, 수입처 다변화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-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추가적으로 선정하고, 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시행할 계획입니다.
- ☞ (참고)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> 업무·정책 > 법령(방위사업청 행정규칙) 「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」 제정(24. 11. 13.)

<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>

- 추진배경 : 「공급망안정화법」 제정(24. 6. 27.)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 필요성 증가
- 주요내용
 -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평가위원회, 방위사업청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도사업자 선정
 - 선정된 선도사업자에 대한 중간평가 및 필요시 특별평가 실시
 - 선도사업자에 대한 생산시설, R&D, 비축, 수입처 다변화 등 지원
- 시 행 일 : 2024년 11월 13일

5-1

「신·구 대비표」(주요내용)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관련 법규 (제도시행일) 관계 부서
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업체의 신청을 받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, 방위사업청(방위산업진흥국장)이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도사업자 최종선정 	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('24.6.27.)
선도사업자에 대한 중간평가 및 특별평가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선도사업자 유효기간의 절반이 경과하는 날부터 중간평가 대상으로 설정하여 중간평가 실시 	
공급망 안정화 지원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「공급망안정화법」 제22조 ~ 26조까지의 지원과 공급망 안정화계획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 	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(02-2079-6463)
기타사항	< 신 규 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선도사업자 선정, 관리, 지원 과정 전반의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 	